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역보건법 개정('21.8.17.)에 따른 시행령 정비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정비(안 제8조)

- 1) 현행 시행령에서 시·군·구에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(안 제8조제1항)
 - 개정 법률(법 제10조제1항)에서 시·군·구에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되,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2)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으로 인구 규모, 지역 특성,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(안 제8조제1항)
- 3) 안 제8조제1항 변경에 따라, 이를 인용하는 문구 수정(안 제8조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제1항 단서”를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-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·군·구의 인구 규모, 지역 특성,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보건소의 설치)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·군·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. 다만,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3조에 따른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	제8조(보건소의 설치)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·군·구의 인구규모, 지역 특성,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② 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